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이정문·조승래·한병도

어기구 • 이연희 • 문진석

임호선 • 이개호 • 민형배

강훈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정비계획안 결정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정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의견이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수단 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외에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 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 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 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심의 요청 시 교통 문제, 환 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교통문제와 환경오염 문제의 방지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집중 문제는 별도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수립 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석에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과 및 인구집중 저감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

법률 제 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따르고,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저감방안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을 인구유발효과 분석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는 지역별·개발사업 유형별 특성과 취업, 신규 주택공급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과 및 인구집중 저감방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하거나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②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	
조에 따른 <u>수도권정비위원회</u> 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	및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
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	
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	
다.	
	<u>.</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② (생 략)	규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교통 문제 및	3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	
한 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	
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u>따르고,</u>	<u>따른다</u> .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	

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저감방 안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u><신 설></u>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 항에 따른 인구집중 문제를 방 지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을 인 구유발효과 분석분야의 전문성 을 보유한 기관·단체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는 지역 별·개발사업 유형별 특성과 취업, 신규 주택공급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 과 및 인구집중 저감방안을 포 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